

# 예 산 총 칙

2012년도 추경 2 회

제 1 조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267,642,957	8,029,289
일반회계	219,729,484	6,591,885
특별회계	47,913,473	1,437,404
공기업특별회계	18,913,067	567,392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18,913,067	567,392
기타특별회계	29,000,406	870,012
수질개선 특별회계	10,044,459	301,334
발전소주변지역지원특별회계	110,448	3,313
주택사업 특별회계	13,946,021	418,381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	838,035	25,141
자활기금 특별회계	1,365,535	40,966
농공단지조성 및 관리 특별회계	1,153,442	34,603
주차장관리 특별회계	1,169,078	35,072
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 특별회계	343,320	10,300
기반시설 특별회계	30,068	902

제 2 조 세입·세출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예산"과 같다

제 3 조 채무부담행위사업은 별첨 "채무부담행위조서"와 같다.

제 4 조 계속비사업은 별첨 "계속비사업조서"와 같다.

제 5 조 사고이월사업은 별첨 "사고이월사업 조서"와 같다.

제 6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4,208,335천원으로 한다.

제 7 조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의 단서규정에 의한 총액인건비에 포함된 경비와 채무상환원리금, 재해대책 및 복구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